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TRUSTON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변경 사항:** ① KRX 시장 대표지수 방법론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2026. 11. 3.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	**2026. 9. 30. 기준**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	**2026. 9. 30.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	**2026. 9. 30. 기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KRX 시장 대표지수 방법론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비교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100% ▪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개요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유도를 위해 개발된 지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의 규모 요건 이외에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적용한 스크리닝을 통해 다양한 질적요건을	※ 비교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100% ▪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개요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유도를 위해 개발된 지수**입니다. 전체종목을 KRX 산업분류(KRICS)*를 기준으로 9 개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의 규모 요건 이외에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

		충족하는 대표기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양한 평가지표를 적용한 스크리닝을 통해 다양한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표기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KRX 산업분류(KRICS, , KRX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에너지화학, 소재, 산업재, 모빌리티, 정보기술, 금융 및 부동산, 소비재, 헬스케어, 미디어 및 콘텐츠 등 9 개 산업군으로 분류**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다.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6. 9. 30. 기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27 기(2024.12.31) 제 26 기(2023.12.31)	**제28기(2025.12.31)** **제27기(2024.12.31)**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6. 9. 30. 기준**